

보수 규정

- 제정 : 1997. 03. 31.
- 개정 : 1999. 03. 01.
- 개정 : 2004. 03. 01.
- 개정 : 2006. 03. 01.
- 개정 : 2015. 09.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 및 본 대학교 제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 각종수당과 기타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본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각종수당을 제외한 봉급표에 표시된 월 본봉 액을 말한다.
3. “봉급”이라 함은 교원의 경우 본봉과 연구수당(연구보조비)을 합산한 금액을, 직원의 경우 본봉 및 사무직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4. “초임급”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책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5. “보수일한계산”이라 함은 해당월의 보수를 당해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매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교 제 규정에서 사용하는 보수, 봉급, 수당 및 초임의 정의는 본교 제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제1항의 정의에 의한다.

제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정한다.

제5조(실비변상등) 교직원은 보수를 받는 이외에 본교의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봉 급

제6조(교원의 봉급) 교원의 월 봉급은 별표 1,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직원의 봉급) 직원 중 사무직원 및 기능직원 봉급은 별표3, 별표4, 별표5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명예교수의 봉급) 명예교수의 봉급은 별표 6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사무조교) 사무조교의 봉급은 별표 7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임시직원 보수) 임시직원의 봉급은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장 연 봉 제

제11조(적용범위) 이 장은 연봉제 적용 교원에게 적용한다.

제12조(연봉) 연봉제 교원의 연봉은 매년 총장이 별도로 결정한다.

제13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제4장 수 당

제14조(수당의 지급대상)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상여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의 보수 지급 일에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명예교수, 사무조교,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② 상여수당은 상여지급대상 전 기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하고 지급대상기간 2분의 1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실제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상여 수당의 계산) ① 상여 수당은 실제의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액은 제외한다.(봉급액은 상여금 지급달의 봉급액을 뜻한다.)

$$(\text{교원}) \text{ 상여수당} = (\text{본봉} + \text{연구수당}) \times \frac{\text{근무월수}}{\text{상여금 지급 기간}}$$

$$(\text{직원}) \text{ 상여수당} = (\text{본봉} + \text{사무직수당}) \times \frac{\text{근무월수}}{\text{상여금 지급 기간}}$$

② 상여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되는 달에 지급한 봉급액은 제외하며, 감봉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교직원이 감봉당하기 이전에 받은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7조(근무기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기간에는 해외출장, 연가, 공가 및 특별휴가기간을 산입한다.

제18조(정근수당의 지급시기 및 대상)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무년수에 따라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중 12월 1일 이전과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중 6월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율에 의한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명예교수, 사무조교,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제19조(체력단련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4월과 10월의 보수지급일에 봉급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체력단련수당을 지급하며, 그 비율은 각 학년도 초 총장이 정한다. 다만, 신규임용 교원의 평가기간과 신규임용직원의 수습기간중에는 체력단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체력단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4월에 지급되는 체력단련수당은 4월1일 현재 재직한 자로서 보수지급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해 지급한다.

2. 10월에 지급되는 체력단련수당은 10월 1일 현재 재직한 자로서 보수지급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해 지급한다.

제20조(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봉제, 명예교수, 사무조교, 임시직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직수당) 보직은 부여받은 교직원에게는 보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범위와 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보직을 2개 이상 겸하였을 때에는 겸임보직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도수당) 교원에게는 학생지도를 위하여 보수지급일에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지도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직무수당) 특수한 기술 및 기능업무에 종사하거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책임자에게는 직무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그 종류와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가족수당)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수당규정을 적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명예교수, 사무조교,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제25조(부양가족의 신고) ①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은 부양가족 신고서를 경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신고서를 당해 달의 15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한 달부터 지급하고, 당해 달의 15일 이후에 제출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이를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

지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휴직자의 가족수당) 휴직(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달 도중에 휴직처분이 무효, 취소되거나 복직 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에 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변상, 지급중지) ① 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28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교직원의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규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는 3월, 5월, 8월, 11월 등 4회에 걸쳐서 지급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당직수당) ① 일직 또는 숙직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 및 숙직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일직·숙직수당의 일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기타수당) ① 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제5장 기 타

제31조(급량비)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사무직원, 기능직원은 별표 14에 의하여 보수지급일에 급량비를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명예교수, 사무조교, 임시직원은 제외한다.

제32조(시간외 근무수당 및 입시수당) ① 교직원이 총장의 명에 의해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수의 계산

제33조(보수계산의 기준) ① 신규임용, 감봉, 전보, 또는 전직의 경우에 보수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

② 승급한 경우의 보수는 승급을 한 날이 속하는 달(3월 또는 9월)로부터 승급호봉의 보수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③ 퇴직한 경우의 보수는 보수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때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보수지급일 이후에 퇴직한 때에는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34조(파견교직원의 보수지급) ① 학교법인 고운학원 또는 동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가가 파견근무를 요청한 교직원이 그 파견근무지에서 보수를 받지 않거나 소속기관의 보수보다 적게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보수의 전액 또는 소속기관의 보수와 파견된 기관의 보수차액을 지급한다.

② 총장의 명을 받아 해외의 연구기관에 파견되거나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35조(결근기간의 봉급감액) 연가, 병가, 공가, 포상휴가 또는 특별휴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 1일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봉급액(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제36조(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 ①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그 기간 중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징계처분기간중의 보수감액)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구 분	파 면	정 직	감 봉
교 비	일할계산	1/3 지급	2/3 지급
연구보조 및 사무직 수당	일할계산	1/3 지급	2/3 지급
기 말 수 당	부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액의 1/3 지급	좌동
체력단련수당	부지급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액의 1/3 지급	좌동
보 직 수 당	일할계산	부지급	2/3 지급
직 무 수 당	일할계산	부지급	2/3 지급
특수업무수당	일할계산	1/3지급	2/3 지급
정 근 수 당	처분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정직 1월에 대해 수당액의 1/9을 감하여 지급	감봉 1월에 대해 수당액의 1/18을 감하여 지급
장기근속수당	일할계산	1/3 지급	2/3 지급
가족 수 당	일할계산	1/3 지급	2/3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월할계산	1/3 지급	2/3 지급
급 량 비	전액지급	전액 지급	전액지급

제38조(면직처분 등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지급) ① 직위해제처분, 면직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그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교직원을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9조(퇴직후의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① 법령이나 본교 제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② 면직된 교직원이 사무인계 기타의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수의 지급

제40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전부 또는 일부 교직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교직원이 면직된 때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을 한 때에는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본교 제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파견,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외여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보수는 당해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인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